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80호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7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개정이유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의 용도에 저소득근로자 자녀 장학금사업을 추가하여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의 용도에 저소득근로자 자녀 장학금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산업 건설수석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132, FAX 042-270-5049, E-mail : khkim2201@korea.kr)
-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저소득근로자 자녀 장학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금의 용도) (서 1. ~ 4. (생 략) <u><신 설></u> <u>5</u> . (생 략)	냉 략)	제4조(기금의 1. ~ 4. (현형 <u>5. 저소득근</u> <u>6</u> . (현행과	행과 같음) 로자 자녀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